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2021. 12. 23.)됨에 따라 청원 업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상향 조정하였던 직급의 정원 5명(서기관 1명, 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20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이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신설기구의 평가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3명, 7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3명, 7급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4. 30. ~ 5.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제8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청원업무

별표 6 방호주사보 1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통신운영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보 “79”를 “82”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8”을 “7”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20”을 “19”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의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사항과 별표 7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법무부령 제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범죄예방데이터과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 부터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전자감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법무부령 제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 2의 정원 5명(서기관 1명, 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6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보호사무관 1명,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 ⑦ (생 략)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⑧ ----- -----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2. 청원업무</u>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u>통신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79</u>	<u>82</u>	+3
•	•	•	
•	•	•	
전기운영서기보	<u>8</u>	<u>7</u>	-1
기계운영서기보	<u>20</u>	<u>19</u>	-1
열관리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5조 관련)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현행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	<u>2024년 9월 30일까지</u>

개정안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	<u>2024년 12월 31일까지</u>